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07 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이헌승·박덕흠·윤상현

김선교 • 서지영 • 백종헌

서일준 • 유용원 • 김도읍

김 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, 동물을 위생적으로 사육·관리·보호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2023년 12월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 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,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또다른 동물 착 취형 산업으로서 반려동물 카페를 개장하고 있는 상황임.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동물전시업에 대하여 동물의 관리나 보호를 강제하는 규정 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동물전시업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며,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 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8조제6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- ⑥ 동물전시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 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
- 2.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 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
- 3.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이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 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

제97조제4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의2. 제7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킨 동물을 보유한 영업자
- 7의3. 제7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전시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 으로 검사하지 아니한 영업자

7의4. 제78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 시킨 동물을 보유한 영업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처 체 | 게 지 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현 행 | 개 정 안 |
| 제78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① | 제78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① |
| ~ ⑤ (생 략) | ~ ⑤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⑥ 동물전시업자는 제1항에서 |
| |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 |
| |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|
| | 1.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이 |
| |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 |
| | 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 |
| | 록 관리할 것 |
| | 2.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의 |
| |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 |
| | 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|
| |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 |
| | 3.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이 |
| |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 |
| | 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|
| | <u>것</u> |
| <u>⑥</u> 제1항부터 <u>제5항</u> 까지의 규 | <u>⑦</u> <u>제6항</u> |
| 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| |
|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| |
|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 | |
| 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 | |
|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 | |

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제97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8. (생략)

⑤ • ⑥ (생략)

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_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• | • |

제97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- 4 ---------
- -----.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7의2. 제78조제6항제1호를 위반 하여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킨 동물을 보유한 영업자
- 7의3. 제78조제6항제2호를 위반 하여 전시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아니한 영업자
- 7의4. 제78조제6항제3호를 위반 하여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 를 교란시킨 동물을 보유한 영업자
- 8. (현행과 같음)
- ⑤ ⑥ (현행과 같음)